

● 환경부고시 제2024-4호

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49조제1항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1월 03일

환경부장관

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

- ① 2023년도 수질 배출부과금,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.0319로 한다.
- ② 2024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.6451로 한다.
- ③ 2024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.1409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.9879로 한다.
- ④ 2024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.6451로 한다.
- ⑤ 2024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.6864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적용례)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